
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(법률 제16790호, 2019. 12. 10. 공포, 2020. 6. 11. 시행)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세부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기준 및 절차(안 제15조의7)

- 1) 분할납부신청, 변경신청, 납부절차,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절차 등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- 2)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

나.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기준 및 절차(안 제15조의8)

- 1)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신청, 검토 및 승인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- 2)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 되는 사례 등을 방지

다. 초지관리실태조사 기준일자 변경(안 제16조)

- 1)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변경
- 2)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동절기에 초지를 월동채소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관련 검토사항

1) 신설·강화 규제

-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기준 및 절차(안 제15조의8)

2) 폐지·완화 규제

-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기준 및 절차(안 제15조의7)

라. 기타

1) 개정안, 별첨

2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3) 법안담당

직 위	성 명	사무실 전화	HP	E-mail
축산정책국장	이주명	044-201-2301	010-6458-5015	leejm66@korea.kr
축산환경자원과장	정경석	044-201-2351	010-3587-4059	godjung7@korea.kr
사무관	남기현	044-201-2352	010-4195-4097	khnam@korea.kr
주무관	김소연	044-201-2354	010-6311-0092	young454@korea.kr

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7 및 제1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7(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납부) ① 영 제16조의3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초지전용허가·신고접수·협의를(다른 법률에 따라 초지전용허가·초지전용신고·초지전용협의를 의제되는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의 신청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(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(이하 이 항에서 "보증서"라 한다)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

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8(용도변경의 승인신청)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
2.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서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이를 검토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7월 1일”을 “9월 3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“「초지법」 제23조2항” 및 “「초지법」 제23조의3항”을 “「초지법」 제23조제2항” 및 “「초지법」 제2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의3서식 중 “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내 분할납부 여, 부”를 추가하고 “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”를 “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귀하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의5서식(1)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(5), 별지 제14호의6(1)부터

별지 제14호의6(4), 별지 제 14호의7서식 중 “농업협동조합중앙회” 및 “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”을 “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, 별지 제20호서식, 별지 제21호서식, 별지 제22호서식, 별지 제23호서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초지법 시행규칙 신 · 구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7(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</u> <u>납부) ① 영 제16조의3에 따라</u> <u>대체초지조성비를 나누어 납부</u> <u>하려는 자는 초지전용허가·신</u> <u>고접수·협약(다른 법률에 따라</u> <u>초지전용허가·초지전용신고·</u> <u>초지전용협약이 의제되는 인가</u> <u>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한다. 이</u> <u>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시</u> <u>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초지</u> <u>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·</u> <u>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<u>하며,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</u> <u>려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한 날</u> <u>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</u> <u>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</u> <u>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</u> <u>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</u> <u>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</u> <u>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0</u> <u>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(분할납</u> <u>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자를 포함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</u> 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(이하 이 항에서 “보증서”라 한다)를 예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제15조의8(용도변경의 승인신청)</u> ① <u>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</u> <u>2.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인</u>

현행	개정안
제16조(초지관리실태 조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<u>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서</u> <u>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이를 검토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</u> 제16조(초지관리실태 조사 등) ① ----- ----- --- 9월 30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초지전용허가(변경허가)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한	35일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(전화번호:)					
신청 내용	소재지				
	초지 조성일		년 월 일		
	이용현황	개량목초 재배지	사료작물 재배지	기 타	계
		m²	m²	m²	m²
	전용계획 면적	농작물 재배지	시설부지	기 타	계
		m²	m²	m²	m²
	공사기간	착공	년 월 일	준공	년 월 일
	전용 목적 및 사유				

「초지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허가(변경허가)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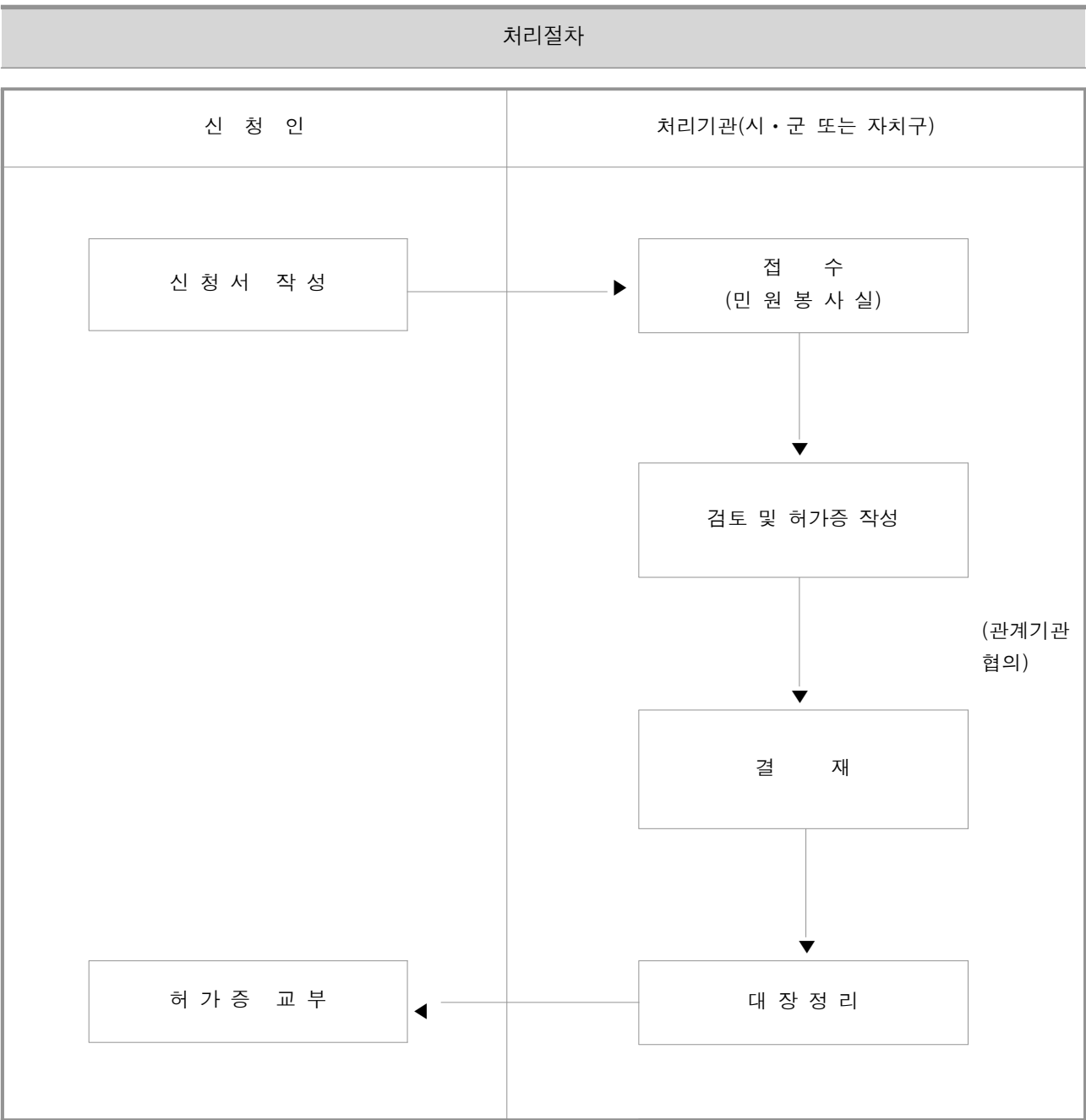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. 피해방지계획서(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잔여초지활용계획서(초지의 일부분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변경사유서(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및 허가증(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초지전용신고서(변경신고서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한		35일	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				
(전화번호:)								
신고내용	소재지							
	초지조성일			년 월 일				
	이용현황	개량목초 재배지		사료작물 재배지		기타		계
		m²		m²		m²		m²
	전용계획면적	농작물 재배지		시설부지		기타		계
		m²		m²		m²		m²
	공사기간	착공	년 월 일		준공	년 월 일		
전용목적 및 사유								

「초지법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 신고(변경신고)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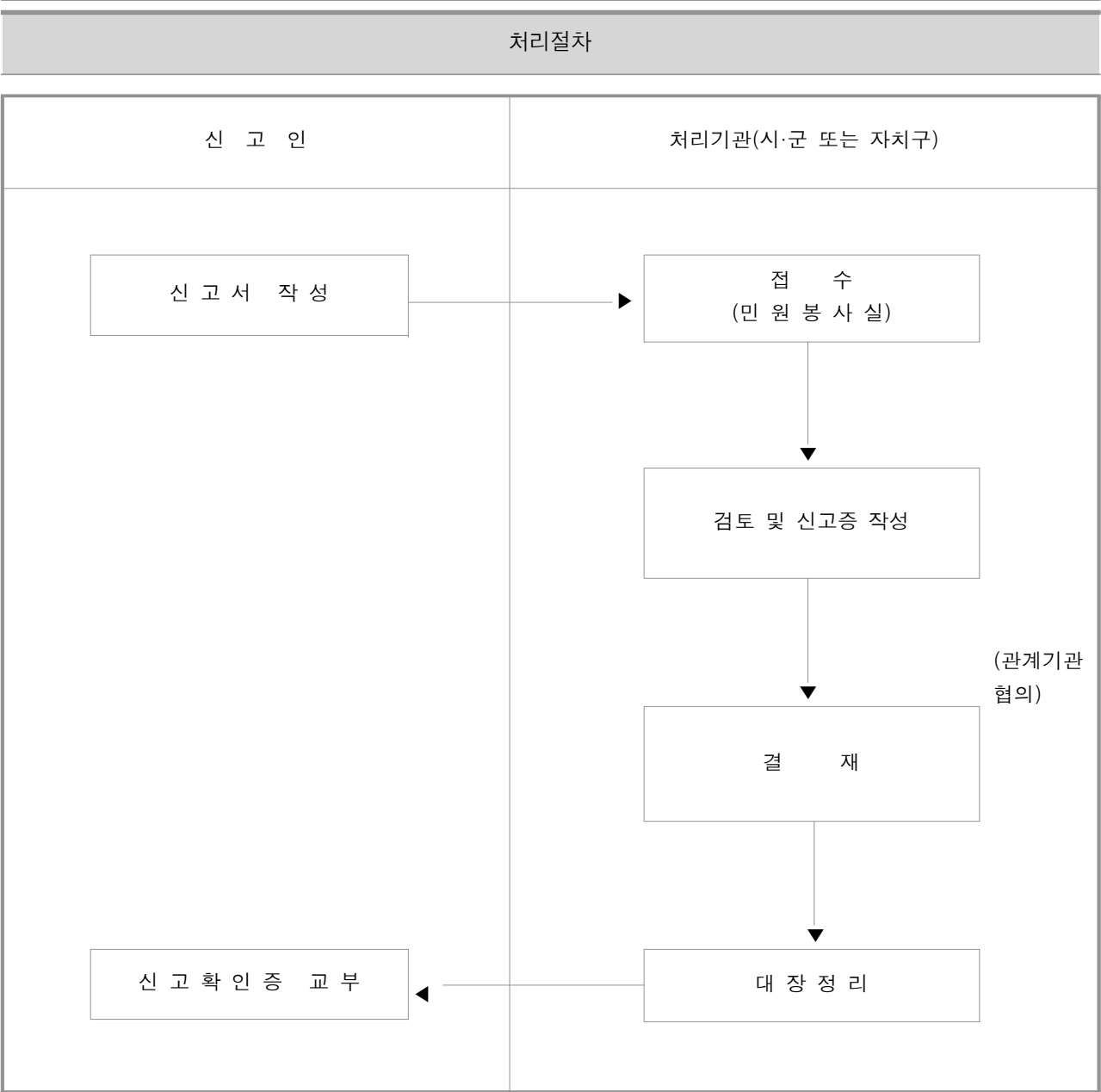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. 피해방지계획서(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잔여초지활용계획서(초지의 일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변경사유서(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.) 및 신고확인증(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통지서

초지전용(허가·신고·협의)번호 제 호		허가·신고·협의일		년 월 일	
납입 의무자 (초지 전용자)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(전화번호:)	
초 지 전 용 내 역	소 재 지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리·동 번지 외 필지			
	초지조성 연 도	년	조성 방법 및 면적	(경운·불경운·임간) m²	
	전용면적	m²	전용 기간		
	전용목적		전용(허가·신고·협의)청		
대체초지 조성비 부과내역	부과금액	금	원정(W 원)		
	산출내역				
	분할납부	[]여, []부			
신고납입	신 고 납입기한	년 월 일			
	신고납입 신청확인	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
납입고지연기여부		승인기한(년 월 일) ※ 승인서 별첨			

「초지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초지전용(허가·신고·협의)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내역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귀하

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원부

고지번호			회계연도	년
납입 의무자	성명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회계구분	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고지 금액	대체초지조성비	원		
	지체금	원		
	합계	원		
납입 기한		년 월 일		
납입 장소				
납입기한 연기	당초	년 월 일		
	연기	년 월 일		

「초지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을 고지합니다.

년 월 일

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
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

고지번호		회계연도		년
납입 의무자	성명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회계구분	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고지 금액	대체초지조성비		원	
	지체금		원	
	합계		원	
납입기한	년 월 일			
납입장소				
납입기한 연기	당초	년 월 일		
	연기	년 월 일		

「초지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3항 및 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할 것을 고지합니다.

년 월 일

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
직인

주 : 1. 납입의무자 : 납입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 경과 전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에게 납입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2. 수납기관 : 납입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.
납입기한이 연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금을 수납하여야 합니다.

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

고지번호		회계연도		년
납입 의무자	성명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회계구분	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고지금액	대체초지조성비		원	
	지체금		원	
	합계		원	
납입기한		년 월 일		
납입기한 연기	당초	년 월 일		
	연기	년 월 일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,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취급자

인

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귀하

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

고지번호			회계연도		년
납입 의무자	성명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회계구분		축산발전기금			
관리기관	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	
고지금액	대체초지조성비		원		
	지체금		원		
	합계		원		
납입기한		년 월 일			
납입기한 연기	당초	년 월 일			
	연기	년 월 일	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취급자

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주 : 취급자 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음.

대체초지조성비 납입영수증

고지번호			회계연도		년
납입 의무자	성명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회계구분		축산발전기금			
관리기관	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	
고지금액	대체 초지조성비		원		
	지체금		원		
	합계		원		
납입기한		년 월 일			
납입기한 연기	당초	년 월 일			
	연기	년 월 일	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귀하

취급자

인

주 : 취급자 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음.

대체초지조성비 납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전용내역통지 문서번호			
납 입 의무자	성 명 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	상호		
대체초지조성비	금	원정(₩ 원)	
신 고 납 입 기 한	년	월	일
회 계 구 분	축산발전기금		
관 리 기 관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부(점) 귀중

첨부서류	「초지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 확인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수납기관은 신고납입 기한이 지난 것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.
- 신고납입기한은 초지전용의 허가등(허가·신고·협의)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
처리절차

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 신청



수 납



신고납입 영수증 교부

신 청 인

처 리 기 관
(시장·군수 지정 농협)

처 리 기 관
(수납기관)

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

전용내역통지 문서번호			
납입 의무자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	상호		
대체초지조성비	금	원정(₩ 원)	
신고납입 기한	년 월 일		
회계구분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귀하

취급자

인

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

전용내역통지 문서번호			
납입 의무자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)		
	상호		
대체초지조성비	금	원정(₩ 원)	
신고납입기한	년 월 일		
회계구분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취급자

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영수증

전용내역통지 문서번호			
납입의무자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	
	(전화번호:)		
상호			
대체초지조성비	금	원정(₩ 원)	
신고납입기한		년	월 일
회계구분	축산발전기금		
관리기관	기금관리자(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)		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위의 대체초지조성비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기관

직인

귀하

취급자

인

주: 취급자 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음.

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[] 신청서
[] 변경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7일	
신청인	성명(명 칭)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		
신청사항	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	면 적(m²)		금 액(원)			
	납부기한	허가 전	1회	2회	3회		
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	
	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액						
	사 유						
근거규정	초지법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						

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이
가
다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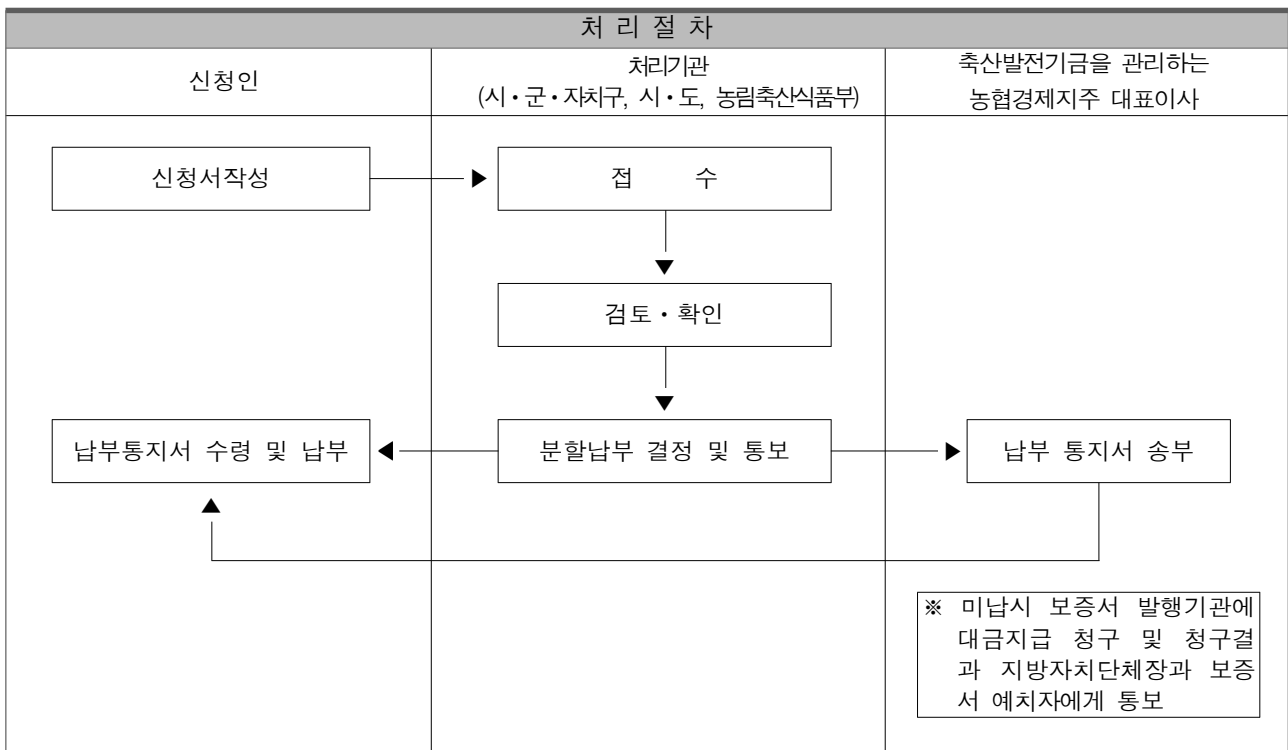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※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

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

- 관련 법령 : 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
- 분할납부 대상
 -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
- 신청 시기 :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
- 신청 서류 : 분할납부신청서
- 지방자치단체 검토사항 :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, 분할납부계획 타당성, 사업계획 확실성 등
- 지방자치단체 처리사항
 - 분할납부 결정시 대체초지조성비의 30%를 사업 허가등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, 미납 시에는 초지전용 허가등이 거 부될 수 있음을 초지전용신청자에게 설명
 - 보증서 발급은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3년 범위 내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, 회차별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하며, 허가일로부터 30일이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고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소됨을 설 명
 - 분할납부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신청일로부터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할 수 있음을 설명
 -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 통지 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 증권 등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
-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 -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 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

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신청(변경신청)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

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(변경신청)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신청인	성 명 (법 인 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
	주 소		(전화번호 :)			
허가·인가·신고일			년 월 일			
처리 결과	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		면 적(㎡)		금 액(원)	
	사 유					
	근 거		초지법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			
	분할 납부 사항	납부기한	허가전	1회	2회	3회
년 월 일	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
	대체초지 조성비 분할납부액					
※ 「초지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.						

끝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			
신청인	성명 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	
허가 · 인가 등 신청일자						
허가 · 신고 협의번호		허가 · 신고 협의일자				
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여부	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 ※ 해당란에 √표시				
용도 변경 신청 내역	초지소재지	번지외필지				
	구분	용도변경전		금회변경		
		계(㎡)	답	전	계(㎡)	답
	용도변경면적(㎡)					
	구분	용도변경전		금회변경		
	용도(목적)					
	초지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구분					
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						

「초지법」 제2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라 초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.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서	수수료 : 없음
------	--	----------

※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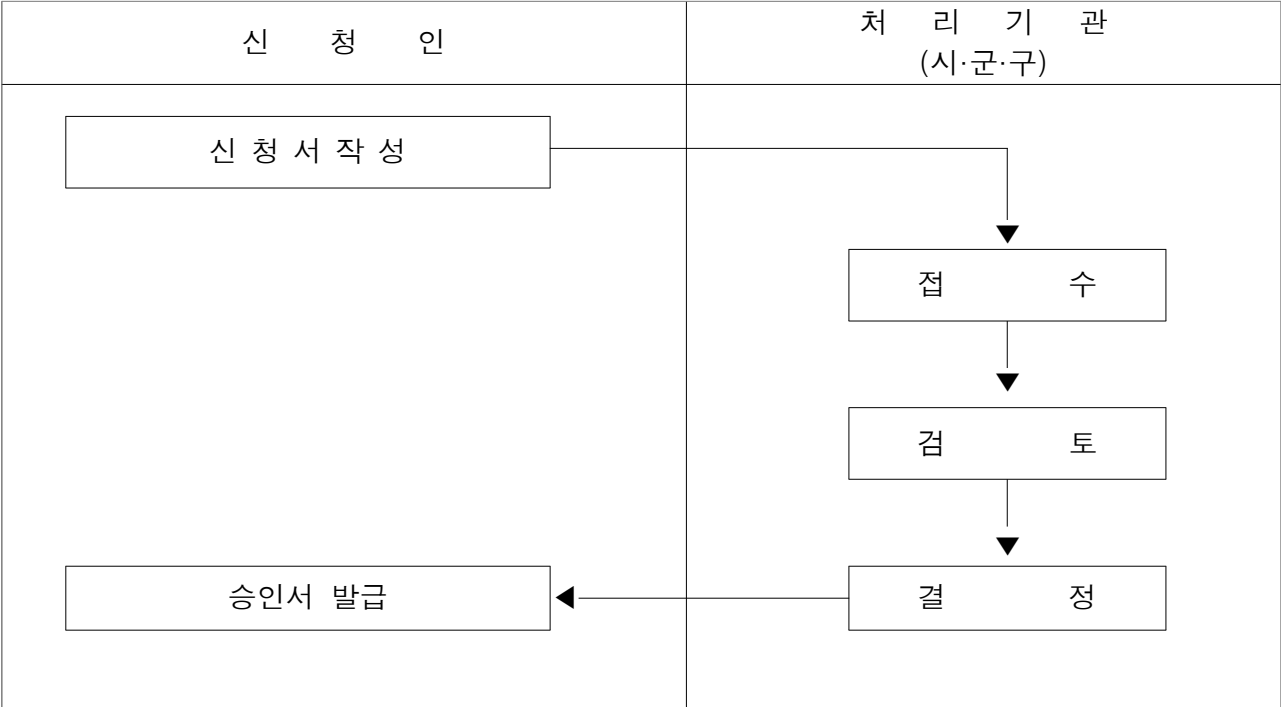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

소 재 지			지번	지목	면적 (㎡)	용도변경전		금회변경	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용도	전용면적	용도	전용면적

처리절차

※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

[illegible]

초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

승 인 번 호		제 호	
신 청 인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전화번호:)		

허가·인가 등 신청일자			
허가·신고 협의번호		허가·신고 협의 일자	
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여부	[] 일시납부	[] 분할납부	※ 해당란에 √ 표시

용도변경 승인내역	초지소재지						
	구 분	용 도 변 경 전			금 회 변 경		
		계(㎡)	답	전	계(㎡)	답	전
	용도변경 면적(㎡)						
	계						
	용 도 (목 적)						

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									
소 재 지			지 번	지 목	면적 (㎡)	용 도 변 경 전		금 회 변 경	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용도	전용면적	용도	전용면적

「초지법」 제2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라 초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352